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3. 20 선고 2013가단5092364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22 선고 2015나2254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3. 20 선고 2013가단5092364 판결

전문

원고 신용보증기금

피고 1. A

2. B

3. C

변론 종결 2015. 3. 6.

판결 선고 2015. 3. 20.

주문

1. 피고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123,207원 및 그 중 23,417,311원에 대하여 2013. 3. 7.부터 2013. 8. 28.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A과 피고 C 사이에 2012. 9. 6. 체결된 매매계약을 29,032,505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A은 원고에게 29,032,50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와 피고 A은 2007. 5. 15. 피고 B의 연대보증 하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보증금액	보증기한	대출은행	대출일	대출금	변제기
2,550만 원	2008. 5. 14.	우리은행	2007. 5. 16.	3,000만 원	2008. 5. 14.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당시 피고 A은 원고가 정한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한편, 원고가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실행 또는 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채권보전비용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3)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한과 피고 A의 우리은행 대출금 변제기는 2013.5. 10.로 최종 변경되었다.

나. 원고의 대위변제 등

1) 피고 A은 2012. 12. 18. 이자를 연체하여 위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원고는 2013. 3. 7. 우리은행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A의 대출원리금 23,417,31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원고는 채권보전비용으로 811,656원을 지출하였고, 그 중 105,760원을 회수하여 잔액은 705,896원이다.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율은 연 12%이다.

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 명의 이전

피고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2. 9. 6. 피고 C 앞으로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피고 B: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나머지 피고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합계 24,123,207원(=대위변제금 23,417,311원 + 채권보전비용 705,896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23,417,311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3. 3.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인 2013. 8.28.까지는 원고가 정한 연 12%,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어 명의수탁자인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 그 부동산은 채무자 소유가 아니므로

이를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하더라도 그로써 채무자의 책임재산 감소를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들어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으며 채무자에게 사해의사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다5410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아파트가 피고 A의 책임재산인지 여부

1) 을 제1 내지 4, 7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A은 이 사건 아파트를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A의 소유 명의로 된 기간에 피고 A을 주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는 원고 주장의 사정은 위와 같은 판단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가) 피고 A의 오빠인 D은 1990. 10. 18.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고, 분양대금 등을 완납한 다음 1992. 12. 30. 위 아파트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D은 2004년경 자신의 처인 피고 C 명의로 인천 서구 E에서 시행하는 재개발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였다. 재개발 아파트가 2007년경 완공되어 피고 C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마칠 경우 1가구 2주택에 따른 중과세를 받게 되었다. D은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7. 10. 19. 여동생인 피고 A의 명의를 빌려 2007.10.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D이 매수한 재개발 아파트 분양권 목적물인 인천 서구 F아파트 218동 2501호에 관하여 2008. 5. 2. 피고 C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D과 피고 C는 1992. 12. 7.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한 이래현재까지 주민등록 변경 없이 계속 거주해 왔다.

다) 피고 A이 사업에 어려움을 겪자 D은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C 명의로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결국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피고 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위 아파트는 D의 책임재산이 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 A의 책임재산이 될 수 없다. 피고 A은 명의신탁자에게 원상회복하는 방법으로 명의신탁자 D의 처인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으로 사해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성민